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주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463

발의연월일: 2022. 1. 18.

발 의 자:이주환·권명호·김기현

김예지 · 김용판 · 박대출

서일준 · 양금희 · 전봉민

정경희 · 최승재 · 태영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하거나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일부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지역 내 산업의 집적효과가 큰 지식산업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감면율을 확대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는 적용기간을 일정 기간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율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40으로,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, 재산세의 100분의 40으로 각각 상향하고, 감면 적용 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58조의2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"100분의 35를"을 "100분의 40을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1,000분의 375를"을 "100분의 40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, "100분의 50"을 "100분의 60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1,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" 을 "100분의 40을 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58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8조의2(지식산업센터 등에 대	제58조의2(지식산업센터 등에 대
한 감면) ① 「산업집적활성화	한 감면) ①
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	
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	
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	
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	
라 <u>2022년 12월 31일</u> 까지 지방	<u>2025년 12월 31일</u>
세를 경감한다.	
1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	1
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5	
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	
시설용(이하 이 조에서 "사	
업시설용"이라 한다)으로 직	
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	
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	
산(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	
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	
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	
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	
임대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	
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	
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	
우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	

서 같다)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 00분의 35를 경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 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를 추정한다.

가. · 나. (생 략)

- 2.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 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 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 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, 000분의 375를 경감한다.
- ②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)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.

1
- 00분의 40을
<u> </u>
,
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
2
<u>10</u>
0분의 40을
②

- 1.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정한다.
 - 가.·나. (생 략)
- 2.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
 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
 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,000
 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
 일까지 경감한다.

1.	2025년 12월 31일
	<u>100분의</u>
	<u>60</u>
	가.•나. (현행과 같음)
2.	
	<u>100분</u>
	의 40을 2025년 12월 31일